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표지

## 1 안전·보건표지란?

-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를 고취하기 위한 사항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 작업장의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 관련법령

- 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 시행규칙 제6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

## 2 안전·보건표지 설치 시 주의사항

-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제작·설치 및 사용한다.
- 임의로 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한다.
- 부착된 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실시한다.
-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 유무 등을 점검한다.
- 유해·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 설치한다.

## 3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 금지표지 : 위험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방화, 소화의 설치를 표시
- 경고표지 : 직접적으로 위험한 것 및 장소, 또는 상태에 대한 경고
- 지시표지 : 불안전행위, 부주의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
- 안내표지 : 응급구호표지, 방향표지, 지도표지 등

<b>1. 금지표지</b>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b>2. 경고표지</b>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 호흡기대인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b>3. 지시표지</b>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b>4. 안내표지</b>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b>5. 관계자외 출입금지</b>	501 허가대상물집작업장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중 보호구/보호복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02 석면취급/해체작업중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중 보호구/보호복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실험실 등 관계자외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중 보호구/보호복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b>6. 문자 추가시 예시문</b>	 취급유해기밀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li> <li>▶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li> <li>▶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li> <li>▶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li> <li>▶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정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li> </ul>						

#### 4 급식실 안전보건 스티커 부착(예시)

그림	설치목적 및 장소
미끄럼 주의 	물기, 바닥에 떨어진 식자재 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 ※ 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후처리실 등 급식실 전 구역에 설치
끼임 주의 	회전체에 의하여 손가락 끼임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 ※ 파절기, 고기다짐기, 양념 분쇄기, 식기세척기 등에 설치
절단(베임) 주의 	작업용 칼,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한 찔림, 베임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 ※ 전 처리실 및 조리실 선반 등 찔림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곳에 설치
허리조심 	20kg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한 요통,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설치 ※ 쌀, 식자재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검수구역 및 조리실, 배식구 등에 설치
뜨거움 주의 	고온체에 의한 화상 등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 ※ 오븐, 국솥, 가스레인지, 뜨거운 물 등 화상의 우려가 있는 모든 설비 등에 설치
충돌 주의 	작업자가 이동 중 부딪힘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 선반 모서리, 이동대차 등 부딪힘 재해 우려가 있는 설비 및 부딪히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시설 등에 설치
안전장갑 착용 	칼작업 등으로 인한 베임, 뜨거운 용기 운반 등으로 인한 화상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 ※ 전처리실, 조리실 등에 설치
안전화 착용 	미끄러짐에 의한 넘어짐 및 낙하물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 탈의실, 출입구, 일반 작업장 등에 설치

#### ※ 추가 안전보건 홍보물 및 스티커 활용방법

책자 마지막 페이지의 '3.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 안내에 따라 홍보물(안전보건자료, 포스터, 스티커 등)을 신청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